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3196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319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51633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변론종결 2021. 10. 22.

판결선고 2021. 11.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51633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목조주택 전문 건축회사가 아니고,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철근콘크리트 건물 신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건축박람회를 참관할 당시 목조주택 전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이 주택을 전시하였고, 주택건축의 상담 또한 ‘주식회사 D’의 G 차장과 F 설계팀장이 함께 진행한 사실, ② G 차장과 F 설계팀장은 모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면서 동시에 피고의 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F이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피고의 설계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2. 24. ‘주식회사 D’와 목조주택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4. 27.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주식회사 D’에서 ‘피고’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에 대해 문의하는 원고에게 피고 측은 ‘주식회사 D’와 ‘피고’가 같은 회사이므로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2018. 4. 27. 체결된 1차 도급계약서 및 2018. 8. 21. 체결된 2차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D’의 G 차장이 계약담당자로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주식회사 D’와 ‘피고’는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의 본점 주소지는 ‘화성시 I’, ‘피고’의 본점 주소지는 ‘화성시 I, 3층’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J, ‘피고’의 대표이사는 K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와 ‘피고’의 직원이 구별되지 아니한 채 양쪽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목조주택 전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와 형식상 법인 이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목조주택 전문 건축회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수차례 반려와 설계변경이 거듭되었고, 2019. 1. 16. 수지구청은 ‘목조주택’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이후 허가된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공사비에 관하여 새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최종 결렬되었고, 결국 타 업체가 주택을 시공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철근콘크리트 건물 신축’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